



제 2019-152호

중국

중국 법원, 게임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에 징역 5년, 벌금 400만 위안 병과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중국에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게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죄를 적용해 엄벌한 사건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음

■ 주요 내용

- 선전시 성성온라인과기회사(深圳市圣盛网络科技有限公司, 이하 ‘성성회사’)는 ‘런런(人人)’ 바둑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데, 성성회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발행권과 운영권을 선전시 성따메이유정보기술회사(深圳市盛大美游信息技术有限公司, 이하 ‘성따회사’)에 수권함



- 2017년 2월 초, 피고인 쉰 모(邱某) 씨는 성다회사에 입사해 총경리직을 맡게 됨. 그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성다회사 SVN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, 허락 없이 ‘런런’ 바둑게임의 원시 코드를 취득함
-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, 쉰 모 씨는 타인과 공모하여 각 청두 쉰커싱과기회사(成都九颗星科技有限公司)와 청두 텐텐러과기회사(成都天天乐科技有限公司)를 설립했으며, 실제로 두 회사를 직접 관리함
- 이후 쉰 모 씨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, ‘런런’ 바둑게임을 약간 수정한 다음 ‘따잉지아(大赢家)’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바둑게임을 운영함. 2017년 8월 쉰 모 씨는 성다회사에서 이직한 후, 쉰커싱회사의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이용하여 텐텐러과기회사가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을 통하여 영리를 취득함
- 2017년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,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의 이용자는 141,721명이며, 2017년 8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온라인 게임의 충전금액은 약 8,224만 위안(한화 약 136억 4천만 원)인데, 그중 쉰 모 씨 개인은 약 200만 위안(한화 약 3억 3천만 원)을 불법수익을 얻었음
- 감정 결과,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의 원시 코드와 ‘런런’ 바둑게임의 원시 코드는 유사도가 99%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, 그 결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됨
- 쓰촨성 청두시 첨단기술 개발구 인민법원(四川省成都市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)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판결함
 - “성성회사는 저작권자로서, 그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. 피고인 쉰 모 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, ‘런런’ 바둑게임의 원시 코드를 절취한 후 기존 프로그램상의 원시데이터를 복제하고 일부 수정 등을 통하여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운영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저작권침해죄인 ‘복제발행’ 행위에 해당한다.”



- “피고인 쉰 모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침해죄를 구성하며, 따라서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. 쉰 모 씨 개인의 위법소득은 약 200만 위안인데, 이는 ‘위법소득의 액수가 매우 큰 경우’에 해당한다. 또한 ‘따잉지아’ 바둑게임의 운영 기간 이용자들의 총전금액은 8,244만 위안에 달해 ‘불법경영 액수가 특별히 큰 경우’에 해당하여 ‘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존재한다.’라고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형법 제217조 규정*에 근거하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지만, 피고인 쉰 모 씨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고, 피해회사의 일부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했으며,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, 성질, 정황, 사회적 위해 정도, 범죄 후 회개 태도, 불법경영 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쉰 모 씨에게 유기징역 5년, 벌금 400만 위안(한화 약 6억 6천만 원)을 병과하며, 사건과 관련된 물품 등은 모두 몰수한다.”라고 판결함
- 1심 선고 이후, 법정 기한 내에 항소와 상소가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함

* 중국 형법 제217조(저작권침해죄)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

영리를 목적으로, 아래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,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,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,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. 위법소득의 액수가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히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,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 한다.

-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, 어문, 음악, 영화, 드라마, 음반, 소프트웨어, 기타 저작물을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
- ② 타인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
- ③ 음반 및 방송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
- ④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저작물을 제작, 판매하는 경우



■ 평가

-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한국 게임 등 해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섭외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도 형법상 저작권침해죄를 적용하여 엄벌하고 있음. 따라서 우리 권리자도 중국 내 게임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■ 출처

- 국가판권국망(国家版权局网)
 - <http://www.ncac.gov.cn/chinacopyright/contents/4509/407169.html>